〈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1225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9.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6.15]

www.jikang.co.kr

jikanq1201@naver.com

[무탄]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지강플래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지강플래닝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16, 4층 4794호]

[전화번호 : TEL : 1533-1097]

[팩스번호 : FAX : 02-3442-785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가맹영업팀) : 1533-109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무탄』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 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l.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무탄 외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 4층 4794호(역삼동,초원빌				ᅾ삼동,초원빌딩)	
(취지강플래닝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 (1)	2020. 11. 20	2020. 12. 01	이대현	1533-1097	02-3442-7856	
	법인등록번호	819-86	-0211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관계인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무탄 외3	서울특별시 강남-	그 논현로 72길 16, 4층 4794호	
사내이사 ㈜지강플래닝/ 이대현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11.20	이대현	1533-1097	02-3442-785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다이닝팩 토리	보슬보슬	2021.08.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대로 122길 15, 6층(논 현동)	이광호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무탄]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무탄	/	
상	호	무탄 ○○점	/	
		무탄	등록번호 : 40-1744100-0000 등록일자 : 2021.06.24	
상표(서비스표)		MUTAN CHINESE DINING	출원준비 중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753	130,444	-124,690	259	-124,288	-124,285
2022년	106,736	371,981	-265,245	124,900	-135,961	-140,554
2023년	749,279	635,460	113,819	3,662,712	378,200	379,06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무탄 90%, 완강정 5%, 지강한식당 5%로 추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어티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		사업경력 청 지의				
선언어구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20.11.20.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6. 1. ~ 2021.07.30	㈜다이닝팩토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이대현	사내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최시 비구 ㅇㄹ	
	ापाट-			2016. 10. ~ 2021.07.30	㈜브라보이노베이션/	회사업무 총괄	
			2010. 10. 12 2021.07.30	대표이사	최시 비구 등달		
			2019. 07. ~ 2021.08.31	㈜리조텔/사내이사	회사업무 관리		
관련	이도현	감사	2020.11.20. ~ 2023.03.31	감사	회사업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21 128 2101	상근	비상근	4
<u>2023년 12월 31일</u>	1	_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지강플래닝/ 보슬보슬	가맹사업경영	2021.08.24. ~ 현재	보슬보슬(등록번호: 2018087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가맹본부 ㈜지강플래닝/ 지강한식당 ㈜지강플래닝/완강 정		가맹사업경영	2021.02.10. ~ 현재	지강한식당(등록번호:2021225 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경영	2022.01.07. ~ 현재	완강정(등록번호:20212260)이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지강플래닝/		2021 05 22 2024 04	카페이모야(등록번호:2021226
카페이모야	가맹사업경영	2021.05.22. ~ 2024.04. 정보공개서자진취소	1)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페이노아		010/1/12	가맹사업경영
(太)エリフトエ コリコ /		000414 491	보슬보슬 왕돈까스
㈜지강플래닝/	가맹사업경영	2024년 4월 정보공개서자진취소	(등록번호:20212262)이라는
보슬보슬 왕돈까스		영보등개시자신위소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지강플래닝/	(T) TI 71 H 711 I / 200 A I 7 A 91		단풍닭발(등록번호:
(위시성들내성/ 단풍닭발	가맹사업경영	2024년 4월 정보공개서자진취소	20213146)이라는 영업표지의
변경함을 		010///NUTI	가맹사업경영
㈜지강플래닝/		 2024년 4월	용마갈비(등록번호:20213145)
용마갈비	가맹사업경영	정보공개서자진취소	이라는 영업표지의
0 11 2 11		828/1/1/12/12	가맹사업경영
㈜지강플래닝/		 2024년 4월	청음떡볶이(등록번호:20213147
	가맹사업경영)이라는 영업표지의
청음떡볶이		8도6개시시신취로	가맹사업경영
㈜지강플래닝/		2024년 4월	지강샤브칼국수(등록번호:2021
	가맹사업경영	2024년 4월 정보공개서자진취소	3148)이라는 영업표지의
지강샤브칼국수		중도등까지자연귀소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허락기간)
무탄	가맹점 상호로 사용	등록일자 : 2021.06.24	등록번호 : 40-1744100-0000	이대현	존속기간 : 2031.06.24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 ▶ 당사는 위의 상표를 소유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무탄] 가맹사업 현황

1. [무탄]을 시작한 날 : 2020년 5월 2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없음)

2. [무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강기획	무탄	이대현	2020.05.21. ~ 2022.0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16, 4층 4794호
㈜지강플래닝	무탄	이대현	2022.03.24.~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16, 4층 4794호

[▶] 당사는 가맹점 개설 후 2020.11.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 [무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무탄	중식	마카롱 멘보샤, 고추유린기,			
	5 역 	트러플스테이크짜장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무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TICH	2021년도 말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1	_	1	1	-	3	2	1
서울	1	1	_	1	1	_	_	2	1
부산	-	_	_	-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	_	_	-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	_	_
전북	_	_	_	_	_	_	-	_	_
전남	_	_	_	_	_	_	-	_	_
경북	_	_	_	_	_	_	1	_	_
경남	_	_	_	_	_	_	-	_	_
제주	_	_	_	_	_	_	ı	_	_

5. 최근 3년간 [무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	_	_	_	_	1
2022년	1	_	_	_	_	1
2023년	1	1	-	_	-	2

6. [무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8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	l점/직영점의	기 수
구분	이름	8합표시	등록번호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보슬보슬	20180877	분식	1/0	2/0	2/0
		지강한식당	20212259	한식	2/0	4/0	3/0
		완강정	20212260	치킨	_	5/0	4/0
		카페이모야	20212261	음료(커 피 외)	1/0	1/0	_
가맹본부	㈜지강플래닝	보슬보슬 왕돈까스	20212262	기타외식	_	_	_
		단풍닭발	20213146	주점	_	1/0	-
		용마갈비	20213145	한식	_	_	_
		청음떡볶이	20213147	분식	_	_	_
		지강샤브칼국수	20213148	한식	_	_	_

[▶] 당사는 카페이모야, 보슬보슬왕돈까스, 단풍닭발, 용마갈비, 청음떡볶이, 지강샤브칼국수 를 2024년 4월에 정보공개서 자진취소를 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기	바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당	
전 체	2	-	-	-	_	_	_	5곳 미만
서울	2	_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_	ı	ı	_	_	_	_
대구	_	-	-	-	_	_	_	-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_	_	-	-	_	_	_	_
대전	_	-	_	_	_	_	_	-
울산	_	_	_	_	_	_	_	-
세종	_	_	_	_	_	_	_	-
경기	_	_	-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	-	-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경북	_	_	ı	-	_	_	_	-
경남	_	_	_	_	_	_	_	_
제주	_	_	ı	1	_	_	_	-

[▶] 당사의 무탄은 가맹점이 2곳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노출 우려로 인해 매출액 기재를 생략하 였습니다.

8. [무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무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2	76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주)지강플래닝 남부지사			호(빛가람동)		
	대표자	대표전호	관리가맹점수			
영남,호남	박병준	1533-1	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		
	2023.01.01~2024.12.31	0	X	X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위: 천원, 부	가세 미포함)	비고
구군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합계			57,075	_	-	
광고 및 판촉	소계	비공개	57,075	_	-	

[☞] 당사는 무탄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무탄에 사용한 비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압구정 중앙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2	1588-9999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용
국민은행 계좌가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국민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

있는 사업자 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개최 개설시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필요서 류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 시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지강플래닝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없음: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무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의 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มฉ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1.가입비 및 영업표지대가	55,000		오픈 전 해약 시	가맹점 오픈	
맹	2.점포선정실사의 대가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이후 반환 안	
비	3.인력지원/매뉴얼 대가		계약체결	상계처리 후 반환	됨	
육	개점 전 교육비	33,000	다이	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 됨	
총계		88,000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มอ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
HAD	2 000	게야 ᆌ걸 다이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의 1회 평균상품 등의 대금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당일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원부재료 대금포함) 의 3배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이내

- ▶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3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합계	91,0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0㎡(100평형)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550,000	5,500	-계약시:50% -중도금:30% -완료시:20%	공사전 계약취소	착공 진행 후	현장상황에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음 특수상권 진행시 평당 22만원추가
간판, 사인물	협력업체	11,000	_	주문시:100%	제작전 계약취소	제작 후	전면1면기준-3M (현장상황에따라추 가비용발생)
주방설비	협력업체	55,000	_	구입시:100%	입고전 계약취소	입고 후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주방집기	협력업체	55,000	_	구입시:100%	입고전 계약취소	입고 후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의탁자	협력업체	22,000	_	구입시:100%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20T / 4인-100 vat별도
인쇄물 등 비품	협력업체	3,300	-	구입시:100%	입고전 계약취소	입고 후	20py이상 추 가 평 당 1 0 만 원 (vat별도)
초도물품 비	협력업체	3,300	_	구입시:100%	입고전 계약취소	입고 후	/
포스	협력업체	1,760	-	구입시:100%	입고전 계약취소	입고 후	기본POS 1대 기준 (지역에 따라 설치 시 추가비용발생) 장비추가시추가비 용 발생
도면비	가맹본부	5,500		계약시:100%	도면제공 전 계약 취소	도면제공 후	
총계		706,860	70,686				

- ▶ 지급대상은 경쟁 입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담자료로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 지방 인테리어 진행시 인테리어 견적의 3%가 출장비로 발생합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간판·장비·설비 등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집 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하며 귀하는 감리비로 3.3m² 당 금 육십육만원(₩660,000)<부가세포함>을 지 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리는 이미지 및 컨셉 관련 부분을 의미합니다.

※ 별도사항

인테리어 별도사항 - 냉난방기, 외부공사, 폴딩도어, 철거공사, 전기증설공사, 화장실공사, 덕 트외부공사, 도시가스공사(내,외부), 어닝, 도시가스불입금, 키오스크, 자동화기기, DID 등 점주준비항목 - 가전기기, 소화기류, 냉온수기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 리모델링은 간판비용와 기타 집기 비용을 제외하고 평당 55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4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6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
가맹희망자 또는	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언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
가맹점 사업자	는 있으며 당사에 점포물색을 의뢰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선정이 완료되어 귀하가 입지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경영마인드와 부합 시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 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반19세 이상	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무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비/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시 가맹점별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공급업체는 경쟁 입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66㎡(2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순매출액의 7.7%	익월 5일	소멸성	영업표지 의 사용대가	매월말일 정산
광고 및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50% 가맹점사업자50%	청구를받은날로 부터2주이내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VII-1 에서정한바에따 라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교 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WI-1 에서정한바에따 라협의하여결정	좌동	좌동	교체 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포스	협력업체	11	매월	소멸성	월 사용료	1대 기준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무탄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빈도/시기는 기본 월1회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 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 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교육비를 가맹본부에게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자세한 절차는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무탄]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4조)

-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 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무탄]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 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 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무탄]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 거래상대방은 경쟁 입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별첨1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무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무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무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별첨2 참조	별지2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 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및 물품공급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 용

※ 귀하가 별첨2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 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 또는 당사의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및
다른 가맹점 사업자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품공급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별첨2와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화요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무탄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500m로 하되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배달의 경우 영업지역 기준 1.5㎞까지 가능 (배달 플렛폼에 매장 노출 시 무탄○○점 필수노출)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지역이 특수공간에 위 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공간만 귀하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벗어나는 곳은 영업지역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양판점,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 병원, 전철역,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공항, 호텔,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 당사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지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 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 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 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rightarrow 당사 담당 팀 검토 \rightarrow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rightarrow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rightarrow 가맹점사업자 동의 \rightarrow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무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 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무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7.67%	42.33%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무탄]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단,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 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ı	정단표는 기를 자꾸	CC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1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당시에 물품공급 중단 사유 어느 하나에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	23조 1항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33조 1항 1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3조 1항 2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2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비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 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 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POS등의 설치(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2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계약서 제33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 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 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 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 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TEL 1533-1097)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 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 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귀하 또는 제3자(제3자의 명의로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종사할 경우에도 해당)로 하여금 [무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에는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경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중화요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완료	문의: 당사 (TEL 1533-1097)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무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 ~ 21:00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영업시간은 매장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등은 해당 매장운영시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 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 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의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가맹점을 관리·감독하는 빈도/시기는 기본 월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을"은 통지 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브다저귀	비고
十世	8 T Q 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01.12
	브랜드광고	50%	50%	산출의 근거를 서	전국광고(TV,라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전체가맹점)	면을 통해 제시	디오, 5대 일간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 등)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 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 업자의 70%이상 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상동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적립포인트제도 기타 판촉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무탄]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 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 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 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계약종료 후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3,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달 지급 시 연체된 로열티의 상당액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 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5일정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8일)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55일 내외	_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 가맹희망자 의욕자질검토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55	-
상담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 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54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등	필요시 실시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 체결	D-39 D-38	_
인테리어시공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투자비 산출 및 인테리어 계약 (계약금50%, 중도금 30%, 잔금20%)주방시설 및 집기류 산출	D-37~7(30일)	- (교육비는
교육	- 매장운영 기본 교육	D-33~3일	최초가맹금에 포함)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 인허가사항 점검 - 간판 제작 (개별 계약)	D-3~1(3일)	,
영업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_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

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 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 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 입비용은 별도입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이 시 설 시 한 그 전 의 시 설 시 의 가 인 의 가 인 이 나 지 가 인 이 나 이 가 인 이 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간판교체 비용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점 만하지 않는 점 포환경개선 20% ○점포의 전점포환 당하는 점포환 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당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 별 의 합의가 있는 내에 서 분할지급 가망 병위 나에 이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가가 가 맹본부가 지정한 정우에는 본부가 지정한 경우에는 전 경우에는 임 이내에 가 맹본부터 13 등을 한 경우에는 본난 너 망본부터 13 등을 한 경우에는 보부터 기 당기 명점사업자가 가 망본부터 14 등을 한 경우에는 기 당기 명본부터 기 당기 명본부터 기 당기 명본부터 기 당기 명본부터 기 당기 명본부터 기 당기 명점사업자가 가 당시업자가 가 망본 부가 지정한 경우에는 본 당기 대생의 기 당기 당기 이내에 기 망본부터 기급 시 절 자의 하는 기 명점사업자의 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 유로 계약이 해지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다액 비례 하는 경우에 비해하는 지급하지 아니하 거나 경우에는 수 가능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ㄹ 처ㅂ/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무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무탄]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게 된 되	메뉴교육	01121(401) V 0001		
개점 전 최초교육	오픈교육	8시간(1일) X 30일 = 240시간	11,000	/
717117	서비스교육	240/11/2		
5	형기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실비	외부 강사 초빙 시
Ы	정기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실비	추가 실비 발생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가로부담하여야 하며, 교육비·숙박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정기교육(비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무탄코엑스몰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 B1층 H12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637,01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POS상의 매출 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영업기간이 1년이 미만으 로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33-109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 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무탄 물류전용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첨2. 무탄 메뉴리스트

순번	구분	메뉴명	사이즈	판매가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1	ШЕ	무탄시그니처세트		99,000		
2	세트	커플시그니처세트		89,000		
3		무탄런치2인코스		98,000		
4		무탄런치3인코스		147,000		
5		무탄시그니처2인코스		198,000		
6	코스	무탄시그니처3인코스		297,000		
7		무탄주말2인코스		78,000		
8		무탄주말3인코스		117,000		
9	1 77 011 1	어향동고		48,000		
10	노포메뉴	제주흑돼지고추잡채		48,000		
11		고흥쭈꾸미특짬뽕탕		58,000	_	
12	, TOEL =	고흥매생이누룽지탕		58,000		
13	스프&탕류	게살스프(1인분)		25,000		
14		전복 산라탕(1인분)		35,000		
15		져보자이내레	S	58,000		
16		전복장육냉채	M	78,000		
17		ココロ	S	70,000	변동 시	
18		전가복	M	100,000	서면이나	00041=
19		갑오징어 양장피		58,000	e메일, 문자, 카톡 기타	2024년 4월 기준
20	일품요리	오향장육		78,000	통신수단으로	4월 기군
21		상어지느러미찜(1인분)		150,000	공지	
22		덕자찜		200,000		
23		게살두부		110,000		
24		게살볶음		110,000		
25	ᆌᄮᄆ	기 사 O 시 스	S	80,000		
26	해산물	게살유산슬	M	100,000		
27			S(3P)	27,000		
28		마카롱멘보샤	M(5P)	45,000		
29	새우류		L(8P)	72,000		
30		ᆌᆁᆁ	S(10P)	48,000		
31		칠리새우	M(15P)	68,000		
32			S	45,000		
33		고추유린기	M	65,000		
34	닭고기류	רוו יינ ס צו זו	S	45,000		
35		대파유린기	M	65,000		
36		사천식라즈지와가지튀김		45,000		
37	육류	제주흑돼지깐풍육		45,000		

38			S	45,000	
39		흑돼지볶음탕수육	M	65,000	
40			S(4P)	68,000	
41		투뿔한우트러플난자완스	M(6P)	98,000	
42			S	48,000	
43		쇠고기안심탕수육	M	68,000	
44		어니언꿔바로우		45,000	
45		뚝배기마파두부		45,000	
46		투뿔한우 가지뚝배기		45,000	
47		스테이크트러플자장면		30,000	
48		고흥쭈꾸미특짬뽕		45,000	
49		투뿔한우 유니간짜장		25,000	
50		벌교꼬막 특 짬뽕		28,000	
51		제주흑돼지고추잡채+마늘볶 음밥		25,000	
52		제주흑돼지 사천탕면		28,000	
53		흑돼지 스테미너짬뽕		28,000	
54	식사류	한우볶음자장면+후라이		19,000	
55		 특제한우탄탄면		28,000	
56		철판 투뿔한우가지밥		28,000	
57		한우사천마파면		25,000	
58		철판 마파두부+볶음밥		23,000	
59		삼선볶음밥+후라이		19,000	
60		더블스테이크트러플자장면		55,000	
61		한우암소차돌짬뽕		35,000	
62	사이드메	공기밥		2,000	
63	뉴	계란후라이 추가		2,000	
64			500ml	66,000	
65		연태고량주	250ml	35,000	
66			125ml	20,000	
67		고ㅂ기조	500ml	66,000	
68		공부가주	250ml	35,000	
69	대만죽엽청주 중국주류 주선방 금문 고량주	500ml	80,000		
70		주선방	500ml	90,000	
71		600ml	180,000		
72		250ml	90,000		
73		TII 가라	480ml	90,000	
74		제갈량	250ml	45,000	
75		공부 부장 10년산	500ml	280,000	
76		자약 프리미엄	500ml	119,000	

77		백년노주노교교령 60년	500ml	400,000
78		테라/카스	500ml	6,000
79		칭따오	640ml	13,000
80		참이슬[후레쉬]	375ml	6,000
81	국산주류	처음처럼	375ml	6,000
82	/ 음료	진로이즈백	375ml	6,000
83		화요(41%)	375ml	50,000
84		화요(25%)	375ml	40,000
85		탄산음료	335ml	3,500

[☞] 메뉴 및 판매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3. 재무제표(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제표(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제표(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